보험금 청구서

KB라이프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3)청구서류(병원서류 등) 4)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주시고, 5)법인의 경우 별지의 법인 계약확인서 및 대리인청구위임장을 추가 작성하여 6)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앱(모바일청구 : 우측 QR코드) 또는 홈페이지 사이버센터를 이용하시면 청구서 작성없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세부사항

청구사유	☐ 수술 ☐ 입원 ☐ 골절 ☐ 사망 ☐ 장해 ☐ 납입면제 ☐ 진단(암,CI 등) ☐ FNB ☐ 통원 ☐ 실손 ☐ 치료 ☐ 기타( )					
발생원인	☐ 질병 ☐ 일반재해 ☐ 교통재해 ☐ 자살	초진병원명		최초진료일자	년 월 일	
사고유형	☐ 교통사고 (☐ 탑승자 ☐ 보행자) ☐ 반복작업 ☐ 운동 ☐ 물건이동 ☐ 넘어짐 ☐ 낙상 ☐ 폭행 ☐ 직업/직무 ☐ 동호회활동 ☐ 기타사고					
사고내용 상세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고장소		
	상세기재			차종	(이륜차여부 : ☐ 예 ☐ 아니오)	
타사가입 여부	보험회사			가입건수	건 (실손여부 : ☐ 예 ☐ 아니오)	
사고 분할보험금	※ 해당시 체크 ☐ 분할지급(확정 지급 대상건에 한하여 발생일에 자동지급) ☐ 일시금(약관기준에 의해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 지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보험료 할인대상여부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인적사항 및 안내 방법 선택

☐ 수익자와 동일 (수익자와 동일한 경우 수익자 정보란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보험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금 청구 관련 처리를 위해서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하며, 고객 확인의무 수행을 위한 신분확인 및 각종 정보확인 등의 절차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직장명 (하시는일)	
수익자(청구자)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피보험자와의 관계		하시는일		실제소유자 여부	☐ 예 ☐ 아니오 ※ 아니오 체크시 실명증표 제출		
	실제소유자	실제 소유자가 수익자 본인이 아닌 경우,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실명증표(신분증)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인계약의 경우 작성제외) 실제소유자 성명 : 주민번호 : 국적 :						
	E-mail	☐ E-mail 안내장 수령 (본인이 계약자인 모든 계약안내장을 E-mail로 전환 합니다.)						
	주소	☐ 자택 ☐ 직장						
	계좌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외국인 및 외국법인	국적 : 영문명 :						
	진행단계 /지급내역안내	☐ 알림톡(SMS) ☐ E-mail ☐ 우편 ☐ 전화	※ 미체크 또는 중복 체크시에는 알림톡(SMS)을 우선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우편 체크시에는 진행단계 안내는 알림톡(SMS)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 42조의 2에 의거, 상기 작성하신 개인정보로 고객정보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단계 및 지급내역 안내는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안내드리며, 심사결과 손해사정서 교부 대상인 경우 알림톡(SMS)으로 발송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민감정보(질병명, 질병코드 등)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수 안내사항 및 서명

보험업법 제95조의 2 제3항, 제4항 등 법령에 의거, 담당부서(연락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심사절차, 예상심사기간(예상지급일),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 대상여부, 손해사정 선임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보험금 청구 이후 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 손해사정 선임 동의 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첨부된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및 지급절차 안내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 합니다.

① 보험금 지급 심사부서 : 보험금부 / 심사 진행사항 문의 및 연락처 : KB라이프생명 보험금 전담 고객센터 (1588-3374, 단축번호 5번)
②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단, 지급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 지연 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요청하신 방법으로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위탁업체(손해사정법인)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수익자(청구자)	(서명)	법정대리인(수익자)	부 : (서명) 모 : (서명)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그 증거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됩니다.
보험사기(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금지된 범죄이며,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제보 : 금융감독원(1332), KB라이프생명(1588-3374)

접수경로 (회사작성란)	☐ Agency 내방 ☐ LP/FP ☐ 고객플라자 ☐ FAX ☐ 등기우편

회사 제출용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1/3)

KB라이프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보험금 지급 · 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및 보험사고 · 보험사기 조사 •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 거래 종료일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금융사고 및 보험사기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 보유 ·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료 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 · 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음(이하동일)

수집 · 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에 관한정보(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 ·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ㄴ 신용거래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 · 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운전면허증 식별번호, 외국인등록증 일련번호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증권번호, 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 정보(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2-1. 제공에 관한 사항(국내)

제공받는 자	• **공공기관 등 :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회사 등 : 생명 · 손해보험사, 국내 재보험사(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지점 포함)*,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회계법인** • **금융거래기관 등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 **보험협회 : 생명 · 손해보험협회** • **Wish Plus특약 가입시 계약자가 지정한 기부단체 및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2/3)

KB라이프

2-1. 제공에 관한 사항(국내)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수행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재)보험금 청구, 외부감사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 업무 •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 · 심사관련 업무지원 • Wish Plus특약 가입시 계약자가 지정한 기부단체 및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 기부금 수령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본 동의서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국외 제3자(본점 및 계열사 포함)에 민감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정보(고유식별정보는 제외)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에 관한정보(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 ·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ㄴ 신용거래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 · 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운전여부,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증권번호, 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blife.co.kr]에서 확인 가능)

2-2. 제공에 관한 사항(국외)

제공받는 자	• 국외 재보험사 (재(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국외재보험사로 당사 홈페이지 www.kblife.co.kr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
제공받는 국가	• 국외 재보험사의 소재국가(당사 홈페이지 www.kblife.co.kr에서 확인 가능)
제공시기	• 재(재)보험금 청구 시점
제공방법	• 온라인 전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재(재)보험금 지급·심사 ※ 국내 소재 재보험사가 재재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국외 재보험사로 귀하의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1) 1개사 이상의 국외 재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국내 소재 재보험사가 재재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 국외 재보험사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당사(원수보험사)가 국내 소재 재보험사를 대신하여 동의를 징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국외 재보험사의 구체적인 명칭 소재국 연락처는 당사 홈페이지 www.kblif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본 동의서 "동의하지 않음"란을 선택하거나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고객센터 ☎1588-3374)에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3/3)

KB라이프

제공 항목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ㄴ 신용거래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증권번호,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생명 · 손해보험협회,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법무부
조회 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 · 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 · 심사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사고 · 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 · 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 생명 · 손해보험협회 : 보험사고 · 보험사기 조사업무 •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법무부 : 실명증표 진위확인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에 관한정보(상병명, 진료기록 등)**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ㄴ 신용거래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운전면허증 식별번호, 외국인등록증 일련번호 보험계약정보(증권번호, 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년 월 일

구분	성명	서명	구분	성명	서명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친권자)		
보험수익자			법정대리인(친권자)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가 서명을 하시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KB라이프

접수	→	현장확인 여부심사 (필요시 생략 가능)	→	현장확인 (필요시 생략가능)	→	지급여부 심사	→	지급 또는 부지급

보험금 청구 접수방법

- 라이프파트너 보험금 청구서비스 / 등기우편 접수 / Agency 내방 접수 / 고객플라자 접수 / FAX 접수 / 디지털 접수(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단, FAX 접수는 사망, 장해, 진단 청구 제외)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또는 KB라이프생명 홈페이지(www.kblife.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별 제출방법]

구분	방문접수, 우편	디지털접수(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팩스
청구금액	제한없음	사망 1억, 그외 청구사유 3천만원 이하 청구 가능	100만원 이하

* 모바일 청구 URL주소 : https://bit.ly/3UedOq8

[금액별 실손통원의료비 구비서류]

청구금액	구비서류
3만원 이하	공통서류+영수증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공통서류+영수증+처방전
10만원 초과	공통서류+영수증+처방전+추가서류(필요시)

*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없는 경우 및 보험금 지급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조회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생명보험협회 : http://www.klia.or.kr)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 합니다.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 라이프파트너 또는 고객센터(보험금 전담 상담) : 1588-3374(단축번호 5번)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건의 소멸시효는 2년 입니다.)

보험금 심사 절차

- 제출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금 지급 심사부서에 접수될 경우, 요청하신 방법에 따라 안내하여 드립니다.
- KB라이프생명 홈페이지(www.kblife.co.kr)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당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당사는 보험금 및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료심사

-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하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제3자를 정하고 장해상태, 진단, 치료관련 기록 등을 기초로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의료 재심사 비용은 KB라이프생명이 부담합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합니다.

손해사정 선임

- 보험금 청구는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손해사정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되며, 이 경우 보험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 합니다.

손해사정 선임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전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 외의 동의 관련한 사항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따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동의 기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대상주1)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 6.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7. 손해사정사가 당사의 보수 체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8. 선임할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신체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와 같이 적법한 자격을 지니지 않은 경우 9. 손해사정사 적격 여부 판단에 필요한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 선임 할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 된 단체에서 손해사정사 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11. 실손의료비 등 손해사정 대상 외에 장해, 수술, 입원 등 정액형 제3보험 계약이 포함된 청구 건 12. 보험금 청구 단계부터 이미 손해사정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 한 건 주1) 손해사정 대상이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 및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을 말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위의 선임 동의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관련 사항은 보험업법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을 준용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 불공정행위 금지	•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기일(비조사시 3일, 조사시 10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보험사고 조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청구 내용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 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타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 ·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재심사 청구 및 분쟁조정절차	•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안내 해드립니다.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아래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www.kblife.co.kr / 고객센터(보험금 전담상담): 1588-3374(단축번호 5번) -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KB라이프타워) KB라이프생명 보험금부 재심사 담당자 앞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KB라이프

- 사고내용 ·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청구서류는 원본 기준이며, 병원발급 서류는 병명, 병원직인, 환자인적사항 및 청구사유별 치료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보험금 송금계좌는 수익자 본인 명의의 계좌 입니다.
- 보험금 심사시 현장확인 및 병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동의서 등을 추가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 · 미 FATCA 협약 및 OECD CRS 협약에 따라 법인이 수익자인 보험금 청구 시 법인계약확인서 및 대리인 청구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그 외 청구건은 추후 개인용 본인확인서, 신분증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담당 라이프파트너 또는 고객센터(보험금 전담 상담) : 1588-3374(단축번호 5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역	청구서류		발급처
공통	기본	① 보험금 청구서 ② 보험금 청구용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3장 ③ 신분증 사본	보험회사
	추가	①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②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당사 양식), 수익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용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③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수익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확인서, 친권자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청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친권자 1인 청구 가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생략 가능 ④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주민센터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
사망	기본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추가	① 재해 사고시 : 재해입증서류 ②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 피보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③ 수익자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대표수익자지정서(당사 양식, 수익자 전원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별상이 주민센터 보험회사
입원	기본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예: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재해사고시: 재해입증서류*	의료기관 서류별상이
	치매간병	[의료기관 소속간병인] 간병인 사용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간병인사용확인서 [사업자 등록업체 소속간병인] 간병인 사용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간병사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업체
통원	기본	진단명(질병분류코드), 통원일이 포함된 서류[예: 통원확인서 등] 재해사고시: 재해입증서류*	의료기관 서류별상이
수술	기본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재해사고시: 재해입증서류*	의료기관 서류별상이
장해	기본 (①또는 ②중 택)	① 후유장해진단서(일반진단서로대체가능한경우) ② (일반)진단서 : 만성신부전, 사지절단, 인공관절치환술, 비장 · 신장 · 안구적출, 장기전절제에 한함 ③ 재해사고시: 재해입증서류* * 일반진단서제출시추가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명시) : X-Ray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서류별상이

최종개정일자 : 2026년 9월

진단	기본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암	① 조직검사결과지 ②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백혈병 : 골수검사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뇌졸중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의료기관
	심근경색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심전도 결과지, 심근효소결과지 등)	의료기관
	말기신부전	혈액검사결과지, 신장기능검사결과지, 초음파검사결과지 등	의료기관
	말기간질환	CT, 간경화진단서(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 확인 필요)	의료기관
	치매	CDR 검사 결과지 등	의료기관
	장기요양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치매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산정특례 승인 완료 입증서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골절	기본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예:의사소견서] ②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X-ray결과지 ③ 진단서 ④ 재해사고시: 재해입증서류*	의료기관
치료	기본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치료확인서 재해사고시: 재해입증서류*	의료기관
	재가•시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재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치아	기본	① 치과치료관련증명서(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영구치발거전후의X-ray) ② 치과치료확인서 ③ 재해사고시: 재해입증서류*	의료기관 보험회사
	추가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단 자료	의료기관
태아	신생아입원비	①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주민센터)
	유산	① 진단서	의료기관
	사산	① 사산증명서 ② 진단서	의료기관
실손입원	기본	①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선택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예: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의료기관
실손통원 (외래/처방)	기본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선택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 통원일이 포함된 서류[예:통원확인서, 처방전] ② 진단서	의료기관
재해입증서류*		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화물,택시 등)사고 사실 확인서 ②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③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④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⑤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⑥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재해 사고내용 기재 ⑦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 확인원	서류별상이

1)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 가능
2)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
3) 동 안내장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 단체보험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사 고객센터(1588-3374, 단축번호 5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